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66호

2016. 8. 18.(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168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6-1701호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6-1719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6-248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16-249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고시	7
제2016-2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
제2016-252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16-254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14

◆ 공 고

제2016-1688호 회계관계직인 폐기 공고	15
제2016-169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15
제2016-1698호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6
제2016-170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27
제2016-17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30
제2016-1705호 회계관계직인 등록 공고	33
제2016-1707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33
제2016-17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4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24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35
-----------------------------------	----

◆ 구 고 시

제2016-8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종로구)	36
제2016-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40
제2016-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노원구)	41
제2016-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42

제2016-111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44
제2016-1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46
제2016-5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금천구)	49
제2016-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시흥천) 고시(금천구)	61
제2016-6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금천구)	64
제2016-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정정 고시(영등포구)	68
제2016-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강남구)	68
제2016-8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71
제2016-1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75

◆ 구 공 고

제2016-6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78
제2016-7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83

◆ 사업소고시

제2016-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85
------------------------------------	----

◆ 기 타

제2016 - 29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86
제2016-29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86
제2016-29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87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8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규정(수임기관 : 구청장)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53, FAX:2133-0822, E-mail:guswj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1호****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장례식의 결정(안 제2조)

나.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라. 장례비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안전지원과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지원과(전화 : 3706-1651, FAX : 3706-1619, E-mail 0102724730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19호****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로 문화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지원 사무, 사업 일부의 자치구 위임 등

다. 생활문화종합지원단 및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10조)

- 설치 및 예산의 지원, 업무영역,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라.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협력위원회의 구성 인원, 역할, 위촉에 관한 전반

마. 생활문화종합지원단 및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4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 취소, 운영상황의 보고·검사 등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 02)2133-2516, FAX:02-2133-1059, E-mail : shs1919@seoul.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8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다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장	은평구 구산동 25-60 일대	1,014.2	감)340.4	673.8	1976.6.17. (서고133)	

※ 공공기여 : 대지 내 보행통로 조성(갈현로16길, 폭 1m, 면적 1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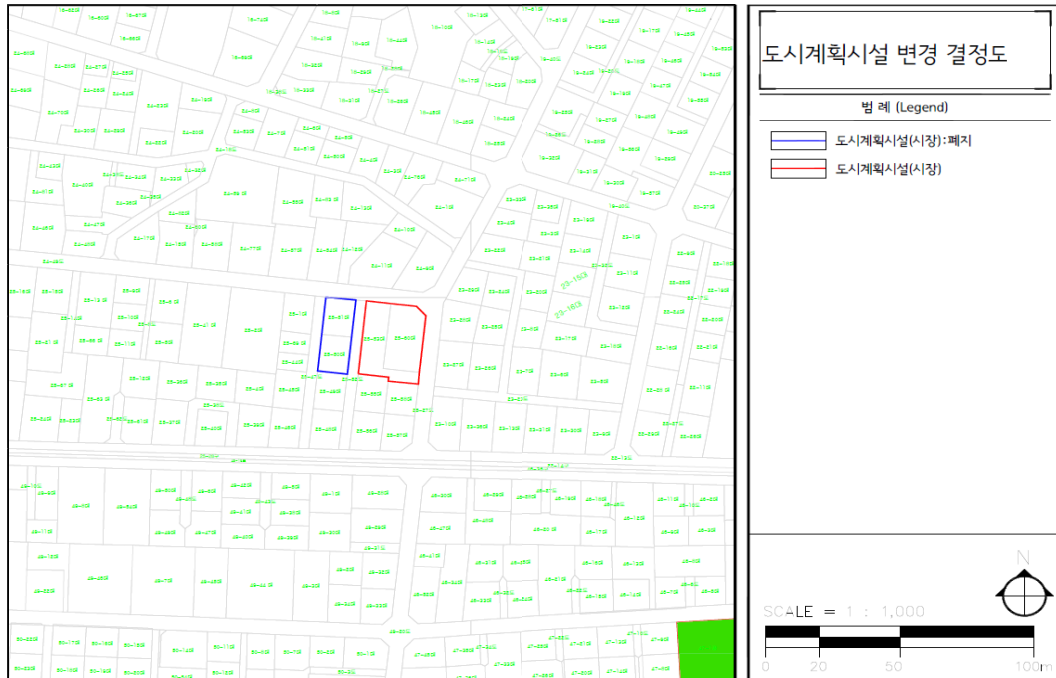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02-2133-840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0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9호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1. 이용요금

구 분		현 행	조 정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5km까지 1,500원
추가요금		□ 5km초과 ~ 10km이내 - 매km까지 마다 300원 □ 10km초과 시 - 매km 까지 마다 35원	□ 5km초과~10km이내 - 매km 까지 마다 280원 □ 10km초과 시 - 매km까지 마다 70원
할증 요금	시간	없 음	없 음
	지역	없 음	없 음

※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인승버스의 요금은 마을버스(성인)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이용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로 한다.

-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 3) 위 1)~2) 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

3. 운행지역 등

가. 운행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인접지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다.

나. 위 “가” 지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도서 지역은 제외)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중 부득이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라.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1588-4388), 팩스(02-2290-6518),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9. 5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1호**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종로구 삼청동 소재 남북회담본부 공공청사 지정을 위해 와룡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도시자연 공원	서대문구 연희동 산 2-13일대	2,086,491.9	증)36,099	2,122,590.9	건설부 고시 제138호 (1977.7.9.)	안산도시 자연공원

나. 지형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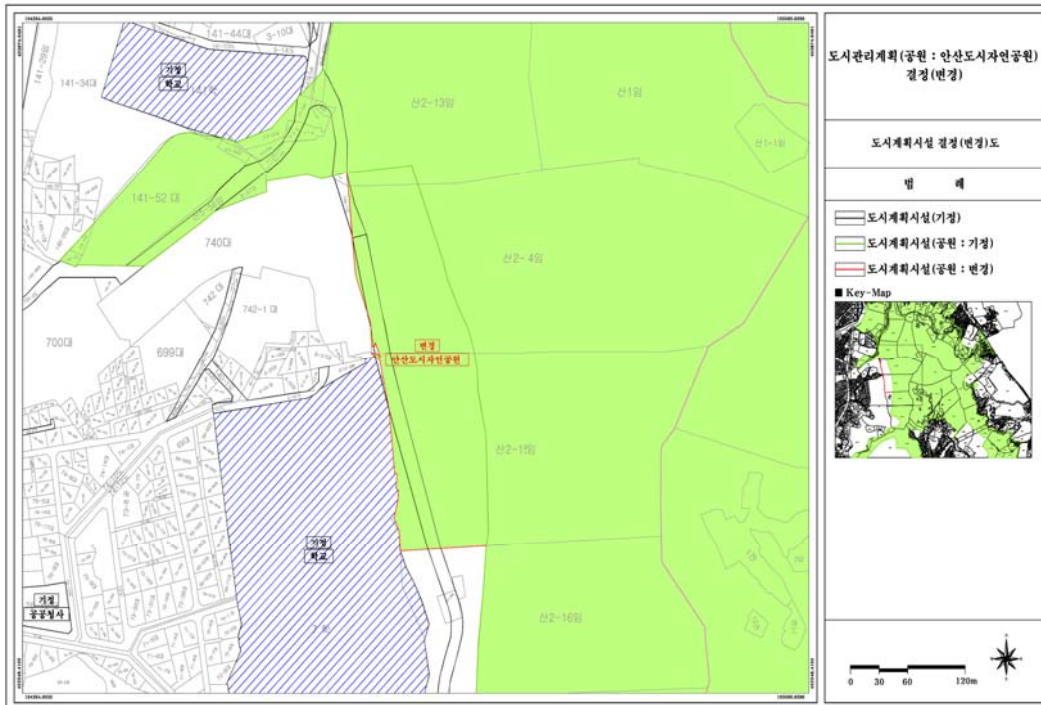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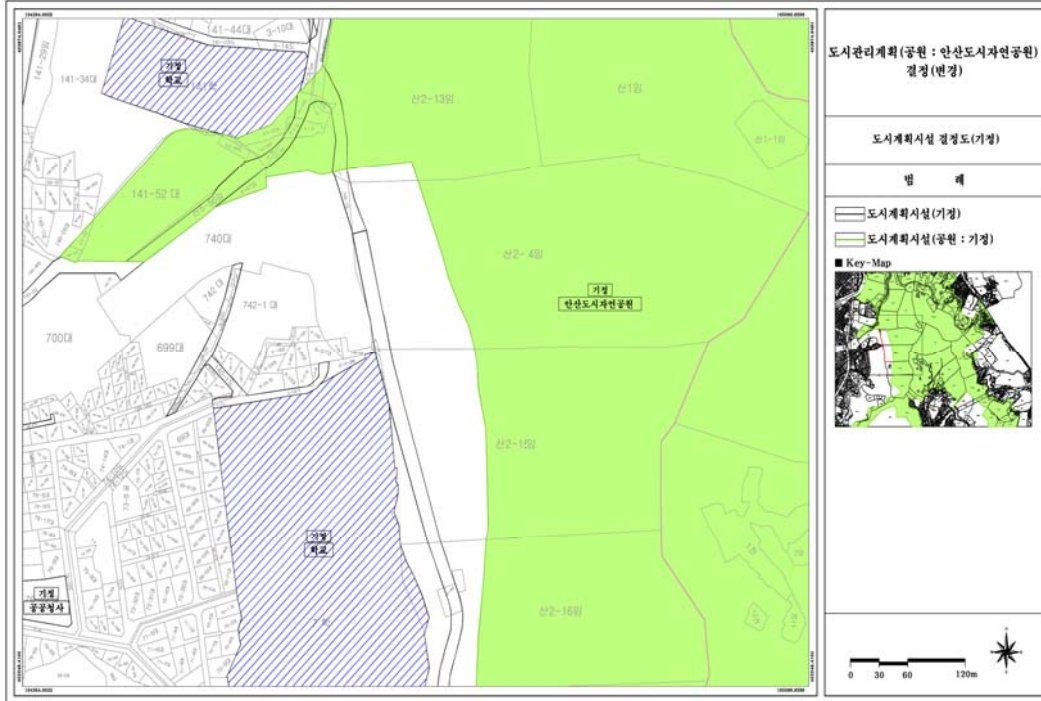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2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북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1. 결정(변경) 취지

- 남북회담본부의 개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정 및 와룡근린공원 면적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종로구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 판동, 삼청동)일대	1,128,372.7	-	1,128,372.7	서울시고시 제2008-200호 (2008.6.12.)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와룡공원	근린 공원	종로구 삼청동 산2-26 일대	204,369 (39,326.2)	감)25,158.2	179,210.8 (14,168)	총독부고시 제208호 (40.3.12)	자연 녹지 지역

※ 별도로 표기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서울시고시 제2010-11호(2010.1.21.)로 고시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와룡근린공원의 면적산정 오류로 인해 기정 면적 정정 (당초 : 1,892㎡ → 정정 : 39,326.2㎡)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	종로구 삼청동 산2-28 일대	-	증)22,700	22,700	-	남북회담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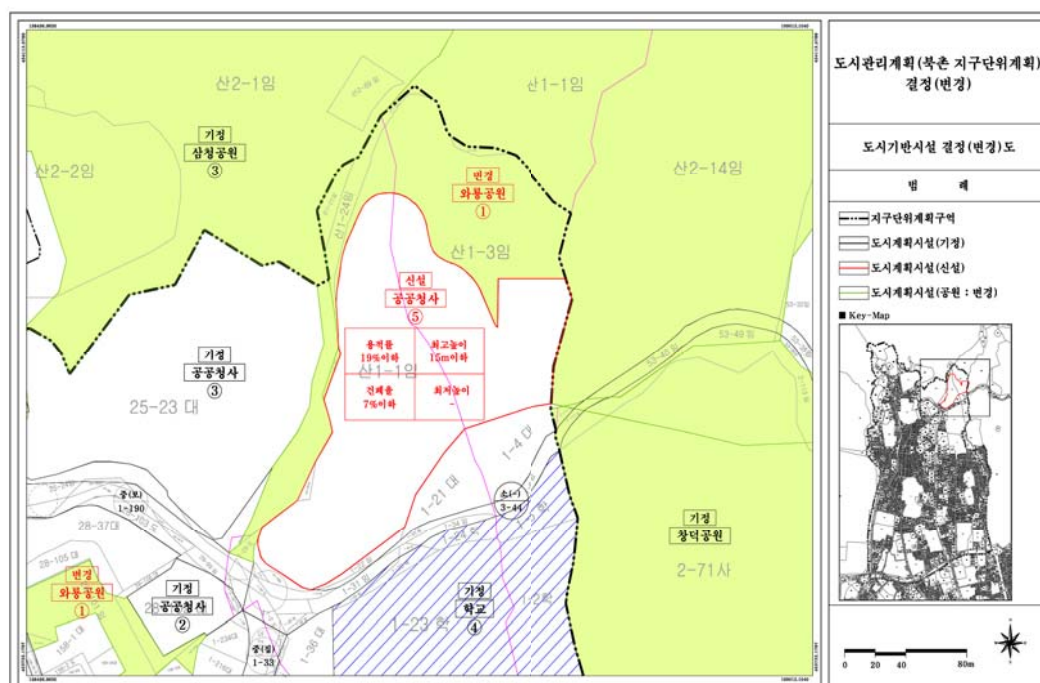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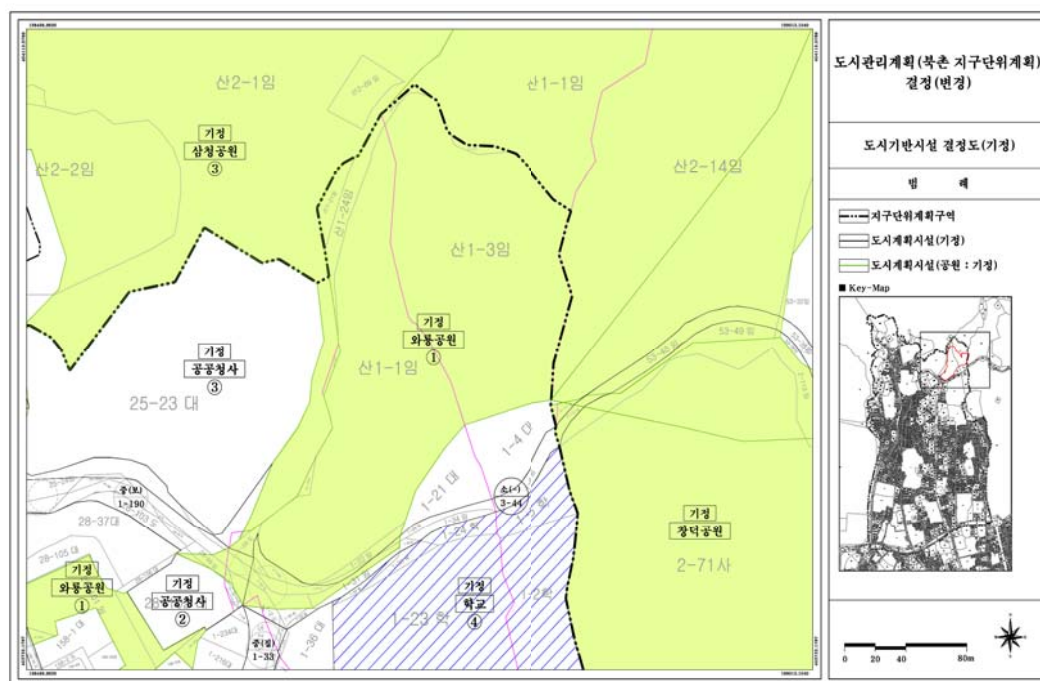
•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A	공공청사	7%이하	19%이하	신축시	2층 이하, 8m 이하	기존현황 3층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시	3층 이하, 15m 이하	

※ 공공청사 부지 내 임상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시 현재의 연면적 범위를 상회할 수 없음.

4.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81-8419)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4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대 상 시 설			지정(해지) 사 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명	소재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꿈마루	광진구 능동로21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요구조체 보수보강 완료	B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88호

회계관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직인 폐기 등록사유 : 2015.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 폐기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강서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5.1.1.	
	강서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5.1.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9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직인(등록사유 : 에너지시민협력과 분임물품출납원 회계운영)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시민협력과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6.8.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6.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698호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 창신승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도4. 암사
- ☐ 대상주택 : 20년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30호 내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포함
- ☐ 사업내용 : 2~3개소 서울가꿈주택 단지 조성
 - 개별주택 :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2. 모집개요

-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
 - 기 심사에서 탈락된 건물은 제외
- ☐ 신청기간 : 2016. 8. 18(목) ~ 2016. 9. 6(화) ※ 필요시 기간 연장
-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

○ 단체 신청은 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이 집수리를 희망할 경우 신청

*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반시설과 집수리 동시 정비

* 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

□ 신청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시재생지원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지봉로5길 5(창신동 237) 3층	2133-846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 신흥로 95-17(용산2가동 1-485)	2199-73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가리봉동 111-5(가리봉동 현장소통마당)	830-7855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성수동1가 13-445) 2층	2286-779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	성북구 장위로 61(장위1동 주민센터 3층)	2241-2811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신촌동 자치회관 1층)	3140-8343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작구 성대로29길 53(상도4동 주민센터 3층)	820-2886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동구 올림픽로97가길 57(암사1동 주민센터 2층)	3425-6042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①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자 서명부, 위치도, 구역현황 사진

②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개인)

- 사업 참여 신청서, 위치도, 집수리 예정 주택 현황사진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④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 신청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2133-7257 담당 성인선)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 ~ 9.6(화)까지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① 타당성 : 집수리 공사 취지 및 목적, 집수리 필요성 등
- ② 효과 : 공사 전후 비교, 공사범위 및 내용,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
- ③ 실현가능성 : 공사 가능여부, 관련법령, 단지형 조성 가능여부 등
- ④ 주민의지 : 사업 이해 및 협조도(홍보관 운영 등) 등
- ⑤ 관련법령 적합여부 : 건축법령 등에 의한 위반 여부 등

3. 주요 지원내용

- ☐
- 집수리 비용 보조 :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

<보조금 지원 기준>

-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 ✓ 지원범위 :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등(신축 제외)
 - ① 외부경관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허물기 등
 - ② 성능개선 : 단열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 ✓ 지원조건 : 준공 후 **4년간 임대료** 동결
- ✓ 지원결정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 시공업체 :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받은 후 선정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및 건축명장 우선 선정

- ☐
- 기반시설 정비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4. 선정결과 발표

- ☐
- 발표일시 : 2016. 9. 30(금) 예정
-
- ☐
- 방 법 : 개별통보

5. 유의사항

- ☐
-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의 경우 사업비를 회수함> —

-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경우
-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할 경우
-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 ①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2133-8465)
- ②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2199-7397)
- ③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830-7855)
- ④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2286-7790)
- ⑤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2241-2812)
- ⑥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3140-8343)
- ⑦ 상도4 도시재생지원센터(☎820-2886)
- ⑧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3425-604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

※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단체)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평가순위
신 청 인 (대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사업내용	① 사업면적(㎡):	② 참여주택 수:
	③ 주요 집수리 내용 (간략히 작성)	
	④ 기반시설 정비 내용 (간략히 작성)	
홍보관 운영	① 홍보관 운영 주택 수 : ② 홍보관 운영 주택 현황 - 소유주 : 소재지 : - 소유주 : 소재지 : - 소유주 : 소재지 :	

상기 본인 외 주민 00명은 '16년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참여주민

서명부 제출

서울특별시

귀하

첨부서류	1.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개인) 및 관련서류 각 1부 ※ 단체로 참여한 주민 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 에 한해 제출 (골목길 정비사업에만 참여하는 경우 미제출)
------	--

[별지 제1-1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참여자 서명부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용 (복수선택 가능)		서명
			집수리	골목길 정비	
1			0	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골목길 환경개선 : 외부담장 개선 또는 건물 외벽 도장 등 골목길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업
(공사예시 : 담장 벽화, 외벽 도색 등)

[별지 제1-2호 서식]

☐ 구역 현황 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 위치도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설명〉	〈위치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16년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2.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 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 제공 알립)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 · 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가꿈주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에 동의함

201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연락처 :

- -

□ 지원조건

※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지침 사항,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주민협정안 결정시 지체없이 동의
- 전문가 사전승인 (3회 : 현장조사, 공사과정 및 준공검사)
-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 계약체결시 장기계약 체결, 기간만료전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반환 약속
-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 사회적기업(집수리분야), 마을기업(집수리분야), 건축명장 등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우선 선정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전시홍보물 설치 협조
- 공사완료 후 1개월간 홍보관 활용 제공(해당 주택으로 선정시)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가.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건축법령 등에 위반건축물 등)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위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 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이를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2016 . . .

위 동의인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818호(2016.4.14.)로 열람공고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공공재생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	35~38	보조 간선도로	3,500	서울역앞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호	퇴계로
변경	대로	1	4	35~43	보조 간선도로	3,500	서울역앞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호	퇴계로
기정	대로	1	9	35~45	보조 간선도로	950	남학동25-1	장충동 타워호텔앞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호	삼일로
변경	대로	1	9	35~50	보조 간선도로	1,236	주자동5-1	장충동 타워호텔앞	일반도로	-	'36.12.26 총고722호	삼일로
기정	중로	1	38	20	국지도로	2,085	남산동2가 (주자동 5-8)	남산광장 (주자동 6-12)	일반도로	-	'60.06.24 내고516호	소파길
변경	중로	1	38	8~20	국지도로	2,177	남산동3가 6-3	남산광장 (주자동 6-12)	일반도로	-	'60.06.24 내고516호	소파길
신설	중로	1	A	22	집산도로	99	예장동 2-102	예장동 2-10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B	24.5	국지도로	118	예장동 2-56	예장동 4-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A	8~10	국지도로	73	주자동 41-10	주자동 40-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B	7~10	특수도로	32	남산동3가 6-3	남산동3가 6-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2	C	5~9	국지도로	76	남산동3가 5-9	남산동3가 5-9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8	국지도로	37	예장동 4	예장동 6	일반도로	-	'84.07.25 서고425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4	대로 1-4	• 폭원 변경 : 35~38m → 35~43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폭원 변경
대로 1-9	대로 1-9	•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35~45m → 35~50m - 연장 : 950m → 1,236m(증286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 1-38	중로 1-38	•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0m → 8~20m - 연장 : 2,085m → 2,145m(증60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폭원 및 연장 변경
-	중로 1-A	• 신설 : 폭원 22m, 연장 99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4차로 22m 도로 신설
-	중로 1-B	• 신설 : 폭원 24.5m, 연장 118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4차로 24.5m 도로 신설
-	소로 2-A	• 신설 : 폭원 8~10m, 연장 73m	•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현황도로 노선번호 부여
-	소로 2-B	• 신설 : 폭원 7~10m, 연장 32m	•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 보행자도로(7~10m) 신설
-	소로 2-C	• 신설 : 폭원 5~9m, 연장 76m	•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현황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 2	-	• 폐지 : 폭원 8m, 연장 37m	• 신설되는 중로와 중복됨에 따라 폐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중구 예장동 4-1 일대	-	증)5,280.65	5,280.65	-	• 중복결정 : 지상(경관광장), 지하(주차장)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신설 : 5,280.65㎡	•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 및 대기청정지역지정으로 화석연료차량 통 행제한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시민편익 증대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교통광장	중구 주자동 6 일대	20,486	감)20,486	-	'78.05.10 서고217호	주차광장
신설	1	광장	경관광장	중구 예장동 4-1 일대	-	증)14,514	14,514	-	• 중복결정 : 주차장(5,280.65㎡) 도로(632㎡), 공원(985㎡)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 교통광장 폐지 : 20,486㎡	•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광장 폐지
1	광장	• 경관광장 신설 : 14,514㎡	• 예정자락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남산의 진입부로서 무분별한 개발(도로, 공공기관)등으로 잠식된 자연경관·환경을 회복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관광장 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청사	—	중구 예장동 6-5일대	3,015.5	감)3,015.5	—	'83.11.04 서고581호	안전기획부
변경	2	공공청사	—	중구 예장동 6-7일대	2,282	증)1,574	3,856	'85.12.17 서고847호	안전기획부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폐지 : 3,015.5㎡	• 남산 예정자락의 자연경관·환경 회복 및 시민의 휴식·오락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광장, 주차장, 도로 등의 조성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2	공공청사	• 변경 : 2,282㎡ → 3,856㎡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도	중구 예장동 3-17 ~ 3-5	169.5	감)169.5	—	' 78.06.23 서고315호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 폐지 : 폭원 1.5m, 연장 113m 면적 169.5㎡	• 남산 예정자락의 자연경관·환경 회복 및 시민의 휴식·오락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광장, 주차장, 도로 등의 조성에 따른 하수도 폐지

라. 재열람공고 사유

- 남산 예정자락 교통체계 개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광장 등) 면적이 변경되고 및 곤돌라 설치계획 중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안)이 취소되어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재열람공고를 시행함.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 2133-8415) 및 공공재생과(☎02)2133-8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기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 (업체명)	조근철(주식회사 지브이산업)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xxx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마이크로 풍력발전설비 구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청문실시		기관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		부서	행정지원과		담당	정은희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97 (신대방2동 470-11)				전화	02-3146-4441		
		일시	2016년 9월 19일(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장소	남부수도사업소 회의실		
		주재자	직 위		행정관리팀장					
			성 명		김형국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은희(02-3146-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5호

회계관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 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의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5.1.2	
	통계데이터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의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07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내역

구분	지정번호	위 치	수 종	주수	수령 (년)	규격		토지소유자	비고
						수고 (m)	흉고 둘레 (m)		
지정해제	서9-4	강북구 변동 93	느티나무	1주	180	13	2.8	서울특별시	

2. 지정해제 사유 : 보호수 주간부가 많이 고사되어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됨
3. 지정해제 예정일 : 2016. 9. 1.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경과(☎2133-2124) 및 강북구 푸른도시과(☎901-6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승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통지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202191	제이앤유글로벌 (주)	김대영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효력상실)	영업정지1개월사전 청문통지 2016.09.05. (10:00~12:00)
2	200252	유경(주)	윤성호	서울 노원구 월계로44길 51, (월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기술계2인 부족)	영업정지1개월 사전 청문통지 2016.09.05. (10:00~12:0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제1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공고기간 : 2016. 08. 18. ~ 2016. 9. 5.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24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362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1363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8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135호(2015.12.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6-3호(2016.1.1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승인 제4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차관리과(☎02-2148-3344)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18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승인 제4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변경전	변경후
면적	1,238㎡(대지 888㎡, 도로 350㎡)	1,322.2㎡(대지 1,018.4㎡, 도로 303.8㎡)
규모	승용차 60~72면, 입체식	승용차 60~75면, 입체식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 146-2)

마. 사업의 기간

변경전	변경후
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2148-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대	74	7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3	대	10	10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3	송인동 464	대	66	66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4	송인동 490	대	43	43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건물 가건물 (창고)	목조 외집(대장) 블록조 외집(현재) 블록조(현재)	1층	43.04 (실측 55)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 지상4층	실측 4 9.66(지상) 31.7(1층) 30.51(2층) 31.72(3층) 26.82(4층)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3	송인동 490	건물	목조 초집(대장) 시멘트벽돌(현재)	1층	16.52 (실측 55)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송인동 463	가건물 (창고) 대문 수도전 담장 물건이전비	시멘트벽돌(현재) 철제(문주포함) - 블록 및 벽돌 창고부속물 등	1층 - - - -	실측 6 1식 1식 1식 1식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변경후>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대	74	7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3	대	10	10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3	송인동 464	대	66	66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4	송인동 490	대	43	43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5	송인동 479	대	123	123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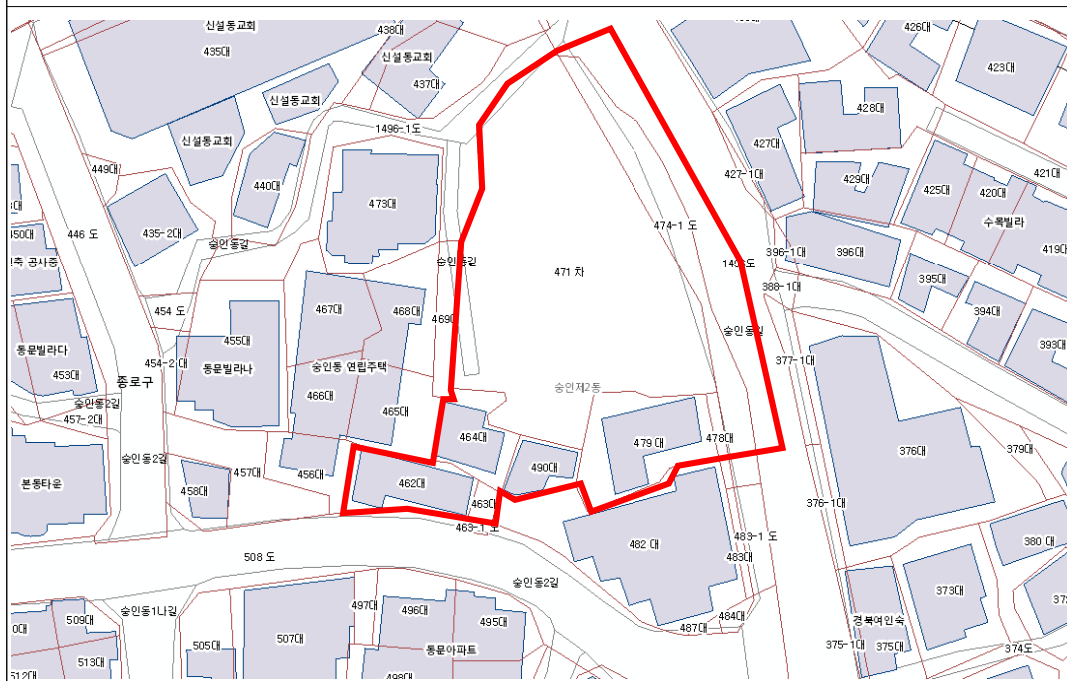
☐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건물 가건물(창고)	목조 아담(대장) 블록조 외침(현재)	1층	43.04 (실측 55)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4	건물	블록조(현재)	1층	실측 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지하1 ~ 지상4층	9.66(지층) 31.7(1층) 30.51(2층) 31.72(3층) 26.82(4층)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송인동 490	건물	목조 초집(대장) 시멘트벽돌(현재)	1층	16.52 (실측 55)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3	송인동 463	가건물(창고) 대문 수도전 담장 물건이전비	시멘트벽돌(현재) 철제(문주포함) - 블록 및 벽돌 창고부속물 등	1층 - - - -	실측 6 1식 1식 1식 1식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4	송인동 479	건물	세멘트벽돌조	1층	43.74 (실측120)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479-1					

위치도 및 사업구역도



위 치 도



사업구역도

◆ 성동구고시 제2016-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76-6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7	25	보조 간선	1,450	성동구 옥수동	성동구 금호동	일반도로	서고149 (‘79.4.10)	
변경	대로	3	117	25	보조 간선	1,450	성동구 옥수동	성동구 금호동	일반도로	서고149 (‘79.4.10)	옥수동 276-6 제척 선형변경 (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옥수동 ~금호동	옥수동 ~금호동	선형변경	옥수동 청사 건립부지 중 276-6번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포함되어 있으나, 지목이 대지이며 경계측량 결과 도로로 활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제척하고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함.

나. 지형도면: 별첨

※ 게재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전(기존규모) : 대학본관 외 27개동, 연면적 255,115.78㎡

3) 변경후(증축 후) : 대학본관 외 28개동, 연면적 255,771.15㎡

4) 신청현황

- 서울테크노파크 어린이집 : 지상3층, 면적 655.37㎡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내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 없음(생략)

아.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 은평구고시 제2016-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과,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563호(2016.5.12.)로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봉산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0-9번지 일대

2)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산131-8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12,743㎡

라. 사업시행자

-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 2016.12.31.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40,802	12,743						
구산동 산136-5	임	33,159	5,1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465-12 유진연립에이동103호	차봉*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0	황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한충*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심형*				
구산동 산136-5	임	190	190	서울 구산동 308-98	변수*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김정*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132	박봉*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성*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 9,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영*				
갈현동 산131-22	임	7,453	7,4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 마포구고시 제2016-111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2015-194(2015.7.2)호로 변경결정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6년 제2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16.7.21)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사유

-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축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중 ‘건축물의 높이’ 변경(경미한 사항)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중 ‘건축물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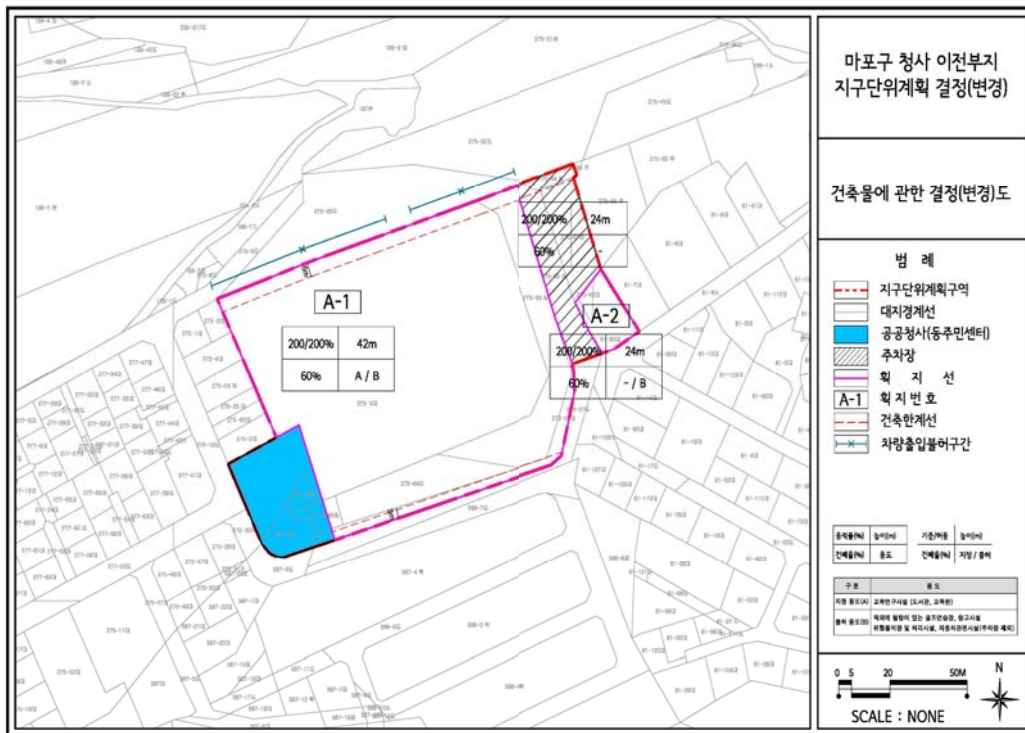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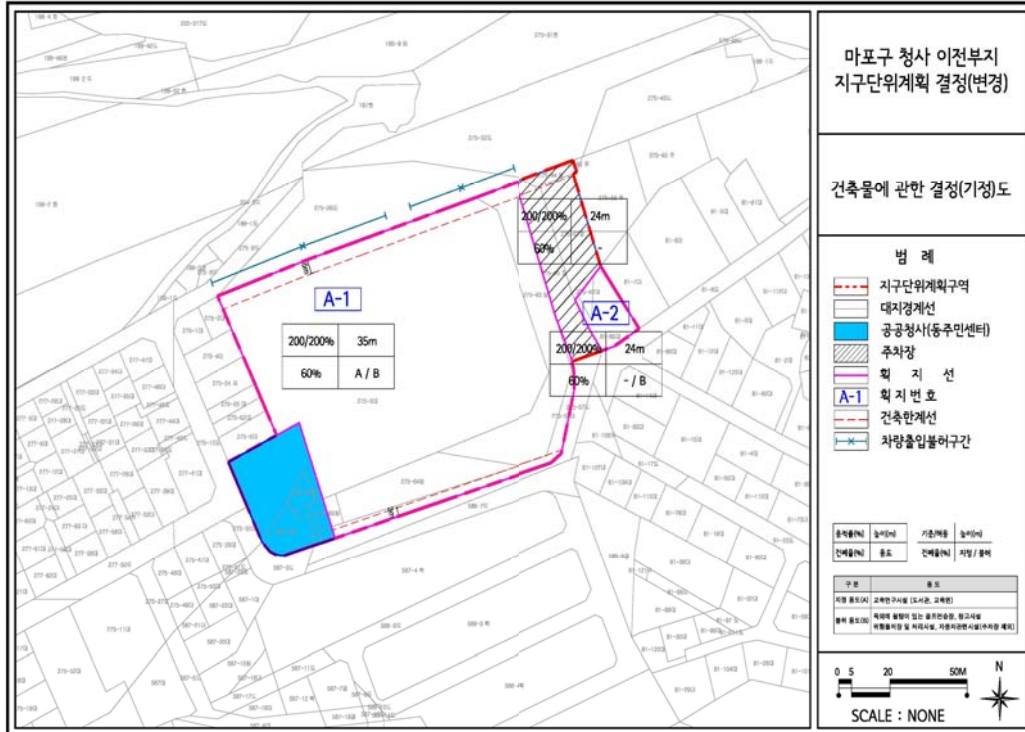
획지번호	건축물의 높이		비 고
	기 정	변 경	
A-1	35M 이하	42M 이하	도로사선제한 배제 (20% 이내 변경)
A-2, 주차장	24M 이하	24M 이하	도로사선제한 배제 (변경없음)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3. 관계도면은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구로구고시 제2016-1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개봉동 108-1 ~ 개봉동 250-8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척동 2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오류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구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로 선형 일부 조정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50	개봉동 108-1	개봉동 250-8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 (1974.01.14)	가각정리(오류중학교)에 따른 경미한 변경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50	개봉동 108-1	개봉동 250-8	일반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류	소로3류	위치 : 고척동 243번지(오류중학교) 동측 담장 규모 : 8㎡ 사유 : 도로 가각정리에 따른 편입	고척동 243번지와 접한 도시계획 시설(도로)의 가각부 조정(편입)

나. 도시계획시설(학교:오류중학교)

- 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	학교	고척동 243번지 일원	14,231.5	감)8	14,223.5	자연녹지 : 20이하 제1종일반 : 35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서울특별시고시 제92호 (1975.06.20)	5% 미만 경미한 변경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오류중학교	구역계 변경 및 면적 축소(감 8㎡)	고척동 243번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편입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3. 지형도면의 작성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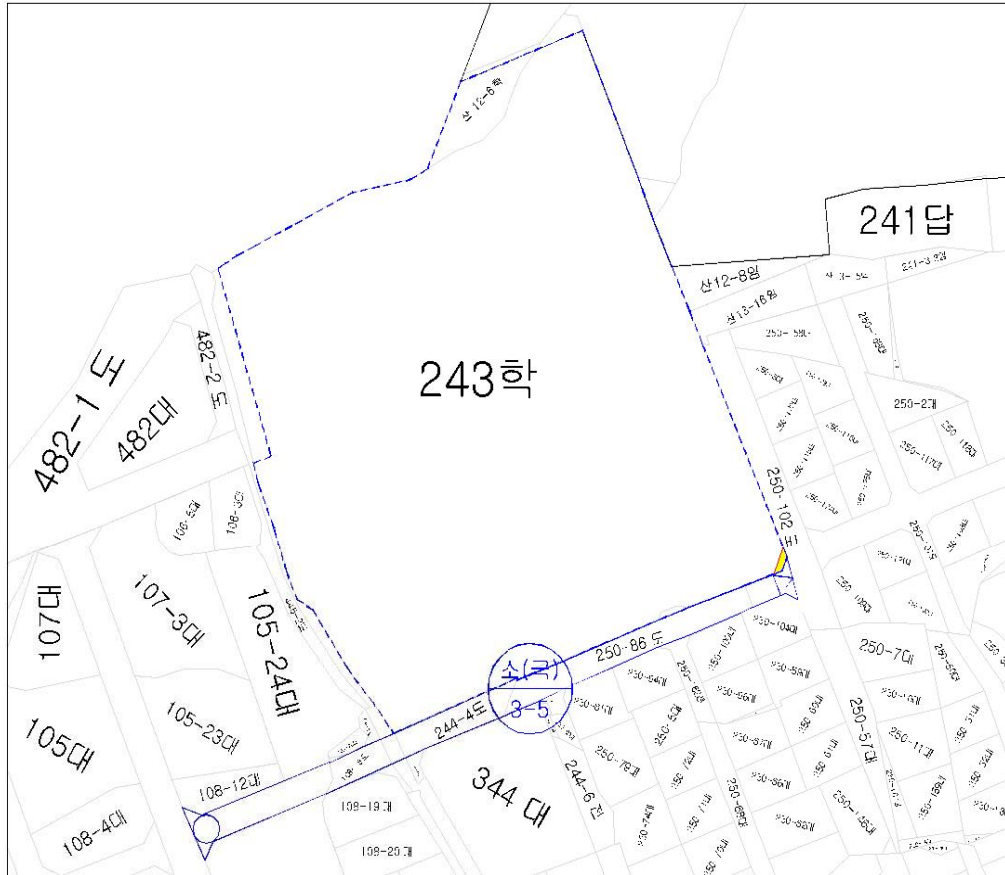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S = 1:1,500



구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직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명	유인오	민광식	이기호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구도				기능	연장 (m)	기정	총정	시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구도	부	표	표 (m)								
구도	스트	3	5	6	도시 스트	150	제정 108-1	제정 250-5	물 나 스트	—	제정 74.01.14	기정(도로 확장사업)이 부담한 영역
구도	스트	3	5	6	도시 스트	150	제정 108-1	제정 250-5	물 나 스트	—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제정	제정						
구분	—	학교	구로동 243번지	14,231.5	4315	14,225.5	2016.08.20 (74.01.14)	도시계획 시설 변경				

변경전

변경후

범례: 변경전 ———— 변경후 ————

◆ 금천구고시 제2016-5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1호(2013.7.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금천구 고시 제2013-43호(2013.10.31)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특별계획구역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746(2016.7.20)호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금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사업(공원)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48-1번지 일원
- 면 적 : 19,588㎡(근린공원 : 16,530㎡, 소공원 : 3,058㎡)

나. 공원 주요 시설계획

- 근린공원 : 잔디 광장, 바닥분수, 휴게 및 편의시설, 산책로 등
- 소 공 원 : 어린이놀이터, 앉음벽, 산책로 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대표 박용태(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2, 논현동)
- (주)제이피홀딩스 대표 이윤상(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우동)

라. 공원계획도면 및 시설계획 : 별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인 : 실시계획고시일 ~ 2016. 11.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448-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6,530.00	6,311.11	2	148.59	152.80	118	16,530.00	4,938.34	2	264.00	264.00	93	감)부지면적:1,372.77㎡ 증)건축물 : 1동 111.20㎡
	소계	2,757.24				-	4,321.26	4,321.26				-	증)부지면적: 1,564.02㎡
	도로	2,029.45				-	2,562.47	2,562.47				-	감)부지면적: 533.02㎡
	광장	727.79				-	1,758.79	1,758.79				-	증)부지면적: 1,031.00㎡
조경시설	1,160.95	1,160.95				-	54.98	54.98				-	감)부지면적: 1,105.97㎡
휴양시설	1,018.20	1,018.20				34	191.06	191.06				38	감)부지면적: 827.14㎡ 증)공작물 : 4개소
유흥시설	408.90	408.90				7	-	-				-	감)부지면적: 408.90㎡ 감)공작물 : 7개소
운동시설	693.71	693.71				6	46.00	46.00				6	감)부지면적: 647.71㎡
교양시설	-	-				2	104.65	104.65	1	104.65	104.65	-	증)부지면적: 104.65㎡ 증)건축물 : 104.65㎡ 감)공작물 : 2개소
편의시설	21.28	21.28				3	182.40	182.40	1	159.35	159.35	2	증)부지면적: 161.12㎡ 증)건축물 : 1동 159.35㎡ 감)공작물 : 1개소
관리시설	250.83	250.83	2	148.59	152.80	66	37.99	37.99				47	감)부지면적: 212.84㎡ 감)건축물 : 148.59㎡ 감)공작물 : 19개소
녹지 및 기타	10,218.89						11,591.66	-				-	증)부지면적: 1,372.77㎡
시설율(변경 40%이하)		(6,311.11 / 16,530) × 100 = 38.18%					(4,938.34 / 16,530) × 100 = 29.88%					감) 8.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소계			2,757.24	2,757.24				4,321.26	4,321.26			증)부지면적: 1,564.02㎡	
	도로		전지역	2,029.45	2,029.45				전지역	2,562.47	2,562.47		증)부지면적: 533.02㎡	
		가		727.79	727.79								폐지)부지면적: 727.79㎡	
	광장							가-1		883.49	883.49		신설)부지면적: 883.49㎡	
								가-2		427.18	427.18		신설)부지면적: 427.18㎡	
								가-3		264.00	264.00		신설)부지면적: 264.00㎡	
							가-4		82.55	82.55		신설)부지면적: 82.55㎡		
							가-5		101.57	101.57		신설)부지면적: 101.57㎡		
조경·시설	소계			1,160.95	1,160.95				54.98	54.98			감)부지면적: 1,105.97㎡	
	연못	나		1,160.95	1,160.95								폐지)부지면적: 1,160.95㎡	
	폰트							나-1		42.00	42.00		신설)부지면적: 42.00㎡	
								나-2		12.98	12.98		신설)부지면적: 12.98㎡	
휴 양 시 설	소계			1,018.20	1,018.20		34			191.06	191.06		38	감)부지면적: 827.14㎡ 증)공작물 4개소
	휴게소	다-1		94.56	94.56			다-1		71.06	71.06			감)부지면적 99.52㎡
	휴게소	다-2		115.52	115.52			다-2		16.00	16.00			감)부지면적 115.52㎡
	휴게소	다-3		102.27	102.27			다-3		16.00	16.00			감)부지면적 86.27㎡
	휴게소	다-4		44.07	44.07			다-4		16.00	16.00			감)부지면적 28.07㎡
	휴게소	다-5		61.5	61.5									폐지)부지면적 61.5㎡
	휴게소	다-6		105.47	105.47									폐지)부지면적 105.47㎡
	휴게소	다-7		28.64	28.64									폐지)부지면적 28.64㎡
	스텐드	다-8		466.17	466.17									폐지)부지면적 466.17㎡
	데크							다-5		72.00	72.00			신설)부지면적 72.00㎡
	파고라	①	전지역				4	①	전지역				1	감)공작물 3개소
	앞음벽	②	전지역				5	②	전지역				28	증)공작물 23개소
등의자	③	전지역				25	③	전지역				9	감)공작물 16개소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유형시설	소개			408.90	408.90			7						폐지)부지면적 408.90㎡ 폐지)공작물 7개소
	어린이놀이터	라		408.90	408.90									폐지)부지면적 408.90㎡ 폐지)공작물 2개소
	조합놀이대	④	라					2						폐지)공작물 2개소
	그네	⑤	라					1						폐지)공작물 1개소
	회전놀이	⑥	라					1						폐지)공작물 1개소
	흔들놀이대	⑦	라					3						폐지)공작물 3개소
	소개			693.71	693.71			6		46.00	46.00		6	감)부지면적 647.71㎡ 감)부지면적 46.46㎡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마-1		92.46	92.46					46.00	46.00			감)부지면적 601.25㎡
	농구장	마-2		601.25	601.25									폐지)부지면적 601.25㎡
	크로스컨트리	⑧						1	④	라			1	
	롤링웨이트	⑨	마-1					1	⑤	라			1	
	트윈윙암	⑩	마-1					1	⑥	라			1	
	체어웨이스트	⑪	마-1					1	⑦	라			1	
	트윈트위스트	⑫	마-1					1	⑧	라			1	
	좌식사이클	⑬	마-1					1	⑨	라			1	
	소개							2					1	감)공작물 1개소
	야외무대	⑭	가					1						폐지)공작물 1개소
교양시설	마구조파고라	⑮	가					1						폐지)공작물 1개소
	커뮤니티센터								마	104.65	104.65	104.65		신설)건축물 104.65㎡ 건폐율 1.48%
	소개			21.28	21.28			3		182.40	182.40	159.35	2	증)부지면적 161.12㎡ 신설)건축물 159.35㎡ 감)공작물 1개소
	자전거보관대	⑯	바	21.28	21.28			2	⑩	전지역			1	폐지)부지면적 21.28㎡ 감)공작물 1개소
편의시설	음수대	⑰	다-6					1	⑪	전지역			1	감)공작물 1개소
	화장실/관리실								바-1	159.35	159.35	159.35		신설)부지면적 159.35㎡ 신설)건축물 159.35㎡ 건폐율 1.19%
									바-2	25.3	25.3			신설)부지면적 25.30㎡
	계단								바-3	4.05	4.05			신설)부지면적 4.05㎡
									바-4	4.03	4.03			신설)부지면적 4.0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관 리 시 설	소계			250.83	250.83	148.59	152.80	66			37.99	37.99			47	감)부지면적 212.84㎡ 감)공작물 19개소
	관리사무소	사-1		112.85	112.85	57.78	58.68									폐지)부지면적 112.85㎡ 폐지)건축물 57.78㎡
	화장실	사-2		133.98	133.98	90.81	94.12									폐지)부지면적 133.98㎡ 폐지)건축물 90.81㎡
	관정	사-3		4.00	4.00											폐지)부지면적 4.0㎡
	공원등	㉔	전지역					43	㉔	전지역					34	감)공작물 9개소
	안내판	㉕	전지역					18	㉕	전지역						폐지)공작물 18개소
	CCTV	㉖	전지역					3	㉖	전지역					4	증)공작물 1개소
	폴리(조명시설)	㉗	전지역					2	㉗	전지역	37.99	37.99			9	신설)부지면적 37.99㎡ 신설)공작물 7개소
	녹지 및 기타			10,218.89							11,591.66					증)부지면적: 1,372.77㎡

다. 도로조서(변경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744.94	2,029.45				
신설	소 계				437.42	1,464.21				
	소 로	3	1	5.2	13.81	83.72	주진입로	북동측 진입구	소로 3-2	
	소 로	3	2	3	268.73	818.03	산책/관리	남서측 진입구	소로 3-3	
	소 로	3	3	3	154.88	562.46	산책/관리	동남측 진입구	소로 3-2	
신설	소 계				307.52	565.24				
	산책로		1	2.5	29.91	76.26	산책로	휴게소(다-4)	소로 3-2	
	산책로		2	2.5	27.06	74.59	산책로	소로 3-2	소로 3-3	
	산책로		3	2.2	19.56	43.01	산책로	부출입구	소로 3-2	
	산책로		4	2.2	13.53	29.78	산책로	소로 3-2	연못(나)	
	산책로		5	2.0	17.98	37.02	산책로	소로 3-2	광장(가)	
	산책로		6	2.0	22.35	44.70	산책로	광장(가)	소로 3-3	
	산책로		7	1.5	31.06	48.54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5	
	산책로		8	1.5	8.45	12.61	산책로	산책로 7	소로 3-2	
	산책로		9	1.5	6.50	9.75	산책로	산책로 15	스탠드 (다-8)	
	산책로		10	1.5	23.71	38.15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6	
	산책로		11	1.5	49.70	102.15	산책로	소로 3-2	나	
	산책로		12	1.2	14.50	17.40	산책로	산책로 4	스탠드 (다-8)	
	산책로		13	1.2	11.99	12.04	산책로	휴게소(다-3)	소로 3-2	
	산책로		14	0.8	20.57	14.92	산책로	소로 3-3	광장(가)	
	산책로		15	0.6	10.65	4.32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9	

다. 도로조서(변경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141.82	2,562.47				
신설	소 계				485.79	1,636.27				
	소 로	3	1	3.0	175.58	526.69	주진입로	북동측 진입구	남서측 진입구	
	소 로	3	2	3.0	102.76	308.40	산책/관리	북측 진입구	소로 3-1	
	소 로	3	3	4.0	49.54	170.25	산책/관리	소로 3-4	소로 3-2	
	소 로	3	4	4.2	151.47	607.17	산책/관리	서측 진입구	소로 3-2	
	소 로	3	5	3.5	6.44	23.76	산책/관리	산책로 13	남동측 진입구	
신설	소 계				656.03	926.20				
	산책로		1	1.2	62.81	75.37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산책로		2	2.0	14.16	28.3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	
	산책로		3	2.0	12.96	25.9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	
	산책로		4	2.0	30.84	61.71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	
	산책로		5	1.5	68.67	58.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	
	산책로		6	1.2	24.93	29.92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2	
	산책로		7	1.2	20.59	24.7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3	
	산책로		8	1.2	20.19	26.47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4	
	산책로		9	1.5	34.43	51.47	산책로	소로 3-4	소로 3-2	
	산책로		10	2.0	4.00	8.00	산책로	소로 3-2	휴게소 (다-1)	
	산책로		11	1.2	22.23	26.35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1	
	산책로		12	1.5	86.16	129.24	산책로	소로 3-1	계단(바-3)	
	산책로		13	1.5	111.45	167.68	산책로	남서측 진입구	소로 3-5	
	산책로		14	1.5	40.00	63.35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3	
	산책로		15	1.5	7.70	11.75	산책로	남동측 진입구	계단(바-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16	1.5	6.70	10.05	산책로	계단(바-4)	남동측 진입구	
	산책로		17	1.5	3.56	5.55	산책로	소로 3-5	계단(바-3)	
	산책로		18	1.0	37.23	34.18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1	
	산책로		19	1.0	35.45	32.25	산책로	산책로 13	소로 3-1	
	산책로		20	2.0	23.00	32.86	산책로	산책로 1	광장(가-3)	
	산책로		21	1.0	7.60	7.00	산책로	광장(가-1)	휴게소 (다-1)	
	산책로		22	2.0	3.79	7.00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5	
	산책로		23	2.0	3.79	6.00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6	
	산책로		24	1.0	3.79	3.00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7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본 시 설	계	3,058.00	580.43				31	3,058.00	605.48			18	증)시설면적 : 25.05㎡
	소계	183.98	183.98				-	426.41	426.41			-	증)부지면적 : 242.43㎡
	광장	-	-				-	170.33	170.33			-	신설)부지면적 : 170.33㎡
	도로	183.98	183.98				-	256.08	256.08			-	증)부지면적 : 72.10㎡
	조경시설	41.18	41.18				-	-	-			-	폐지)부지면적 : 41.18㎡
휴양시설	355.27	355.27				14	41.21	41.21				12	감)부지면적 : 333.50㎡ 감)공작물 : 2개소
유흥시설	-	-				-	133.36	133.36				3	신설)부지면적 : 133.36㎡ 신설)공작물 : 3개소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				-	-	-				-	
편의시설	-	-				-	4.50	4.50				-	신설)부지면적 : 4.50㎡ 신설)공작물 : 1개소
관리시설	-	-				17	-	-				3	감)공작물 : 14개소
녹지및기타	2,477.57						2,452.52						감)부지면적 : 25.05㎡
시설율 (법정 20%이하)	(580.43 / 3,058) × 100 = 18.98%						(564.60 / 3,058) × 100 = 19.79%						감)0.81%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합 계			3,058.00	580.43			31			3,058.00	605.48			18	감)부지면적: 25.05㎡ 감)공작물 : 13개소
	소계			183.98	183.98					426.41	426.41					증)부지면적: 242.43㎡
	도로		전지역	183.98	183.98					전지역	256.08	256.08				증)부지면적: 72.10㎡
	광장								가-1		115.87	115.87				신설)부지면적: 115.87㎡
	광장								가-2		54.46	54.46				신설)부지면적: 54.46㎡
조경 시설	소계			41.18	41.18											폐지)부지면적: 41.18㎡
	디딤석		가	41.18	41.18											폐지)부지면적: 41.18㎡
휴양 시설	소계			355.27	355.27			14			41.21	41.21			12	감)부지면적:314.06㎡ 감)공작물 : 2개소
	휴게소	나-1		226.34	226.34				나-1		22.49	22.49				감)부지면적: 203.85㎡
	휴게소	나-1		128.93	128.93				나-1		18.72	18.72				감)부지면적: 110.21㎡
	양음벽	①	전지역					14	①	전지역					3	감)공작물 : 11개소
	등의자								②	전지역					6	신설)공작물 : 6개소
아외테이블셋									③						3	신설)공작물 : 3개소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형 시설	소개										133.36	133.36			3	신설)부지면적: 133.36㎡ 신설)공작물 : 3개소
	어린이놀이터								다		133.36	133.36				신설)부지면적: 133.36㎡
	조합놀이대								④						1	신설)공작물 : 1개소
	놀이시설A								⑤						1	신설)공작물 : 1개소
	놀이시설B								⑥						1	신설)공작물 : 1개소
편의 시설	소개										4.50	4.50			1	
	음수대								⑦	음수대	4.50	4.50			1	신설)부지면적: 4.50㎡ 신설)공작물 : 1개소
관리 시설	소개														2	감)공작물 : 14개소
	공원등	②	전지역													폐지)공작물 : 8개소
	안내판	③	전지역													폐지)공작물 : 6개소
	CCTV	④	전지역						⑧	전지역					2	증)공작물 : 1개소
	관수용 수전	⑤	전지역													폐지)공작물 : 1개소
독지 및 기타				2,477.57							2,452.52					감)부지면적 : 25.05㎡

다. 도로조서(변경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72.21	183.98				
신설	소계				72.21	183.98				
	산책로		1	2.6	54.92	143.06	산책로	남서측 진입구	휴게소 (나-2)	
	산책로		2	2.3	17.79	40.92	산책로	휴게소 (나-1)	휴게소 (나-2)	

라. 도로조서(변경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60.25	256.08				
신설	소계				160.25	256.08				
	산책로		1	2.0	55.65	111.03	산책로	남서측 진입구	북측 진입구	
	산책로		2	1.2	7.23	8.68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1	
	산책로		3	1.2	20.87	26.35	산책로	남측 진입구	북측 진입구	
	산책로		4	1.2	4.76	5.72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1	
	산책로		5	1.2	71.74	104.30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1	

◆ 금천구고시 제2016-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시흥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45(2016.5.26.)호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시흥천 단면 확장 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시흥천 단면 확장 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홍수 능력 향상을 위해 『시흥천 단면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시흥천 일대 주변의 홍수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공사개요
 - 하천 단면 확장 : L = 461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교 하부(안양천 유입부) ~ 시흥사거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서울시 금천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6. 9. ~ 2018. 3.
6.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물건 : 불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금천구청 치수과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단 위	전 체	사 업 계 획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량	m	461	-	100	280	81
사 업 비	백만원	7,400	-	2,000	4,300	1,100

9. 예정공정표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구조물공 (토공포함)						
가시설공						
포장공						
부대공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후 금천구에서 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기타사항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금천구청(치수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기관인 금천구 치수과(☎02-2627-1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시흥천 단면 확장 공사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시흥동	1000-66	도로	2,468.6	31	서울특별시					무상사용 (영구)
2		996-8	구거	770.3	38	금천구					"
3		996-13	공장용지	1,147.6	63	광명시					"
4		996-12	공장용지	1,001.5	843	광명시					"
5		996-14	구거	18.1	17	서울특별시					"
6		992-74	대지	46.1	24	광명시					"
7		992-71	구거	58.3	6	금천구					"
8		1000-166	도로	2,206.6	338	서울특별시					"
9		1000-44	도로	869.9	59	서울특별시					"
10		1000-46	도로	2,413.1	275	서울특별시					"
11		992-73	대지	61.4	45	광명시					"
12		1000-167	도로	125.2	44	서울특별시					"
13		995	도로	2,616.3	555	서울특별시					"

◆ 금천구고시 제2016-6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775호(2016.8.4.)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내 세부개발계획』 내 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 외 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군부대특별계획구역내 사회복지시설

다. 사업의 규모 :

- 면 적 : 615㎡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건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건축계획 및 인허가 별도 절차 진행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아. 변경사항 :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기존 623㎡ -> 변경 615㎡)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차.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대지권)

사업시행자 : 금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흥동113-142회 6필지)

번호	소재지 주소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
		공부상 현황	공부상 현황	공부상 현황	현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615						615
1	시흥동 113-142	대	441	대	441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441
2	시흥동 113-39	대	102	대	102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102
3	시흥동 113-41	대	23	대	23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23
4	시흥동 113-42	대	7	대	7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7
5	시흥동 113-43	대	2	대	2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2
6	시흥동 113-44	대	39	대	39	고원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34-1, 101동303호(한신아파트)				39
7	시흥동 산191	묘지	1	묘지	1	(주)제이피홀딩스피 에프브이	강남구 도산대로 322, 파라다이스B/D 3층				1

지 장 물 조 서

사업시행자 : 금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흥동113-142회 6필지)

입 선 번 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설계 요구 사항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시흥동 113-142필지	나무		5주		미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영등포구고시 제2016- 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정정 고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길동 253-297~신길동 335-37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구고시 제2016-68호(2016.08.04.)로 실시계획 작성·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권리명세’에 착오 기재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정정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권리명세(중로2-1)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정정 전	1	신길동	337-364	도로	변경(정정)내용 없음								
정정 후				대									

※ 기타 사항은 변경(정정) 내용 없음.

2. 정정사유: 지목 착오 기재에 따른 정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02-2670-3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고시 제2016-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강남구고시 제2016-1054호(2016.6.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한 강남구 선릉로18길 15(개포동 156) 등 일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기정 : 5,240㎡
- 변경 : 6,118㎡(증878㎡)
- ※ 지장물 등 123동(증 21동)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변경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추가)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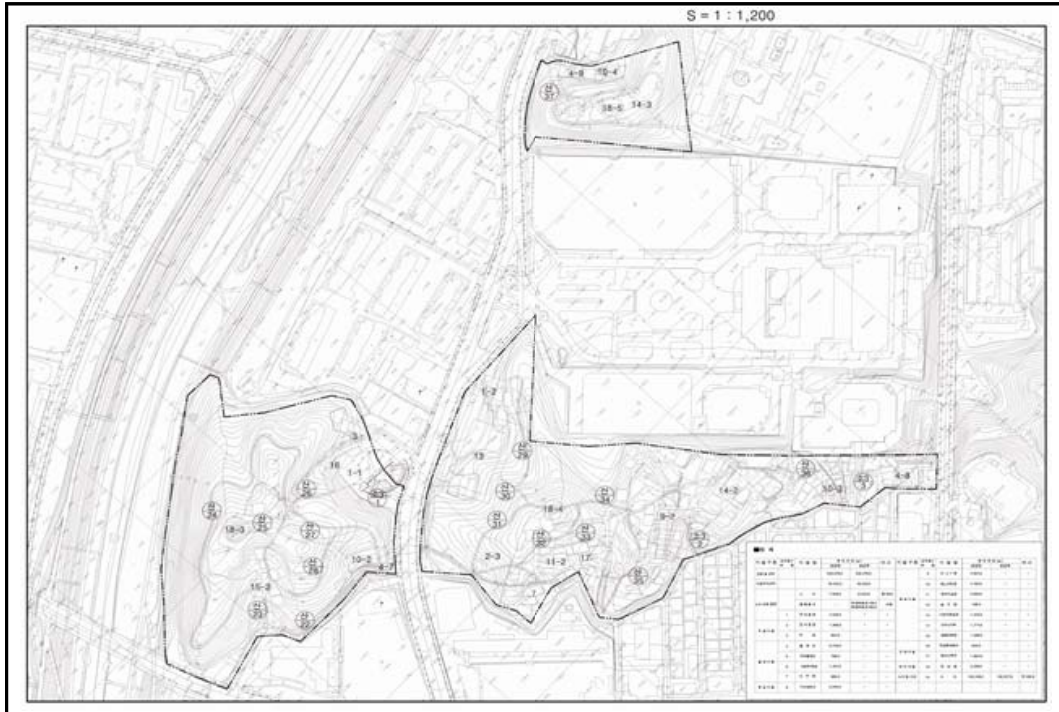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02-3423-69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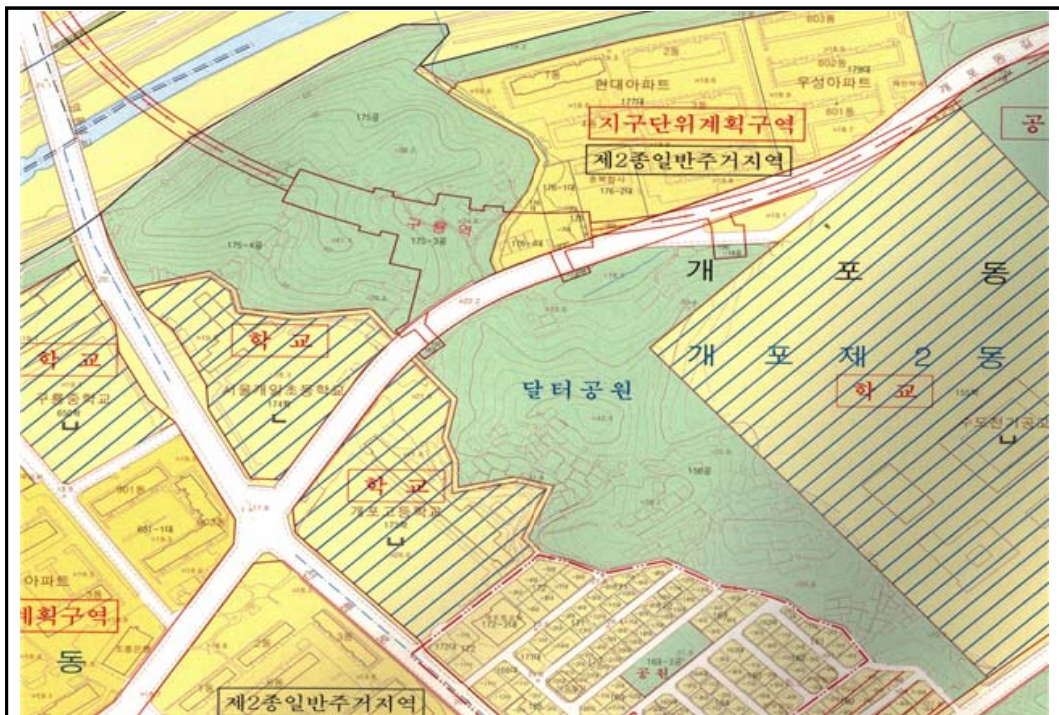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9㎡)	1	주거	송**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10
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6㎡)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18
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1㎡)	1	주거	홍**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1
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70㎡)	1	주거	윤**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37
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6㎡)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38
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44㎡)	1	주거	배**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53
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2㎡)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64
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0㎡)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0
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2㎡)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1
1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41㎡)	1	주거	남**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4
1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2㎡)	1	주거	송**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5
1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25㎡)	1	주거	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8
1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6㎡)	1	주거	전**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김미경	좌 동	2-1
1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78㎡)	1	주거	홍**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9
1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0㎡)	1	주거	오**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8
1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1㎡)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99
1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6㎡)	1	주거	송**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08
1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55㎡)	1	주거	우**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11
1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목재/스레트(38㎡)	1	주거	손**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29
20	강남구 개포로403	건물	목재/스레트(44㎡)	1	주거	정**	강남구 개포로403			3-11
21	강남구 개포로403	건물	목재/스레트(42㎡)	1	주거	유**	강남구 개포로403			3-12

설계도서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송파구고시 제2016-8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변경)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이동 49번지 외 3필지’ 공동개발을 위한 주민제안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공동개발 지정, 도로확폭 등)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도로확폭 등) 변경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1	6~8	국지 도로	314	방이동 47-11	방이동 48-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71	6~8 (7)	국지 도로	314	방이동 47-11 (방이동 49)	방이동 48-6 (방이동 49-14)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기정	소로	3	72	6~8	국지 도로	321	방이동 49-6	방이동 50-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72	6~8 (7)	국지 도로	321	방이동 49-6 (방이동 49-10)	방이동 50-6 (방이동 49-10)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기정	소로	3	84	4	국지 도로	39	방이동 49	방이동 49-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3	84	4~6 (6)	국지 도로	39	방이동 49 (방이동 49)	방이동 49-12 (방이동 4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 ()는 사업부지 내 사항임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D1-10	방이동 49, 49-10, 49-13, 49-14	1,111.4	-	공동개발 지정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 치	건축 한계선	- 방이지역 : 1~4m - 사업부지 : 2~3.5m	- 방이지역 : 1~4m - 사업부지 : 1~2m	동/서측 각 1m, 북측 2m 도로확폭 및 북측 건축선 0.5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축소(선형변경 없음)

○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방이지역 : 1~4m - 사업부지 : 2~3.5m (차도형)	- 방이지역 : 1~4m - 사업부지 : 1~2m (차도형)	동/서측 각 1m, 북측 2m 도로확폭 및 북측 건축선 0.5m 확폭에 따른 건축선 폭원축소(선형변경 없음)

※ 특기사항

- 북측 이면도로 확폭(4m→6m)부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연접지(방이동 49-11,12) 개발시 북측도로 2m 확폭(기부채납)하고 전면공지 2m 확보’하도록 함

관계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300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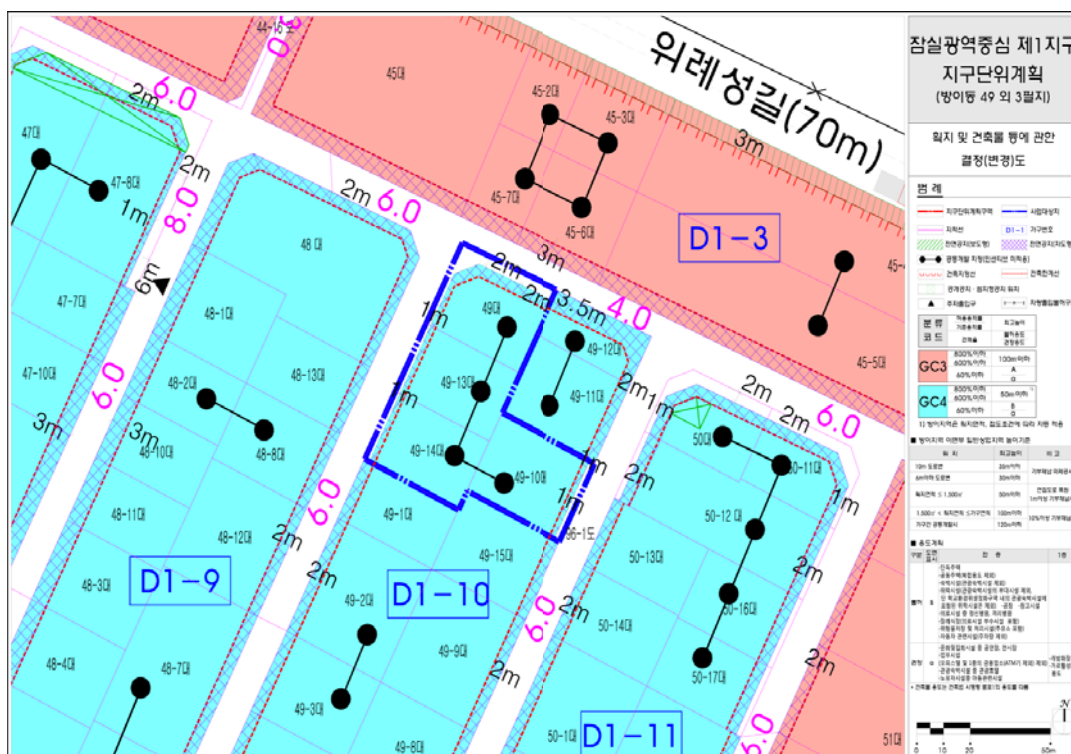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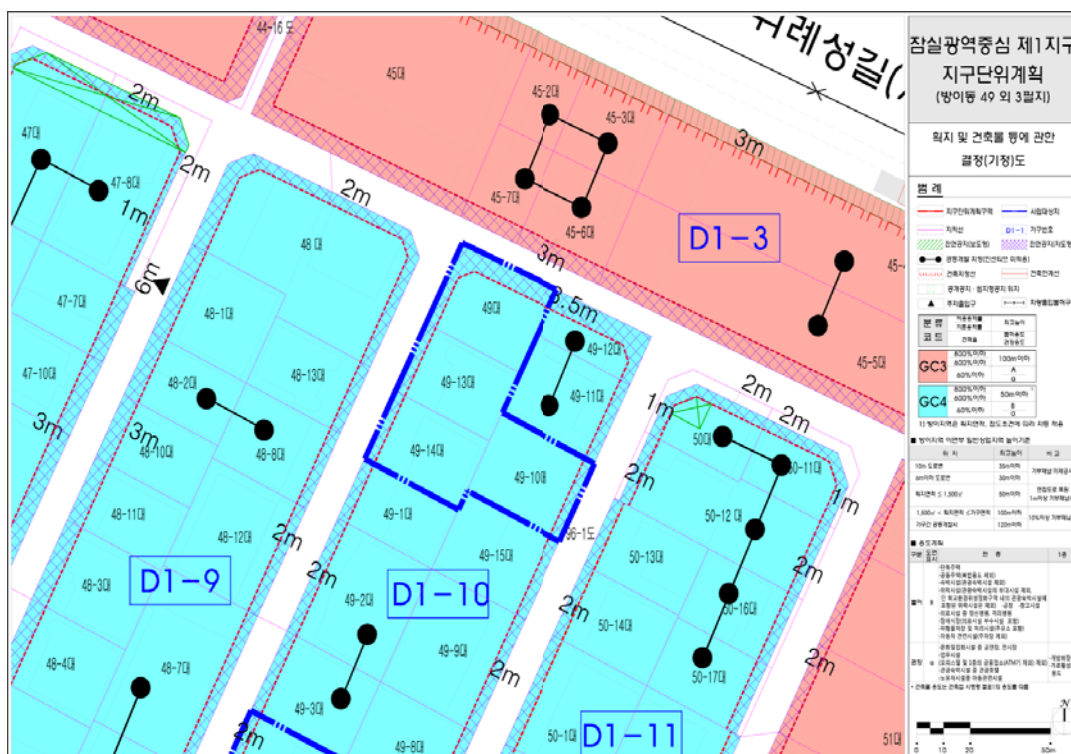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강동구고시 제2016-12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40호 (2016.3.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5번지 외 1필지 암사역사생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5 외 1필지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 마. 규 모 : 토지보상 3,451㎡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아.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2필지									
당초	1	195	전	3,121	3,121	홍순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2길 50, 옥탑층(성내동)	강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둔촌역지점)	근저당	
								이연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29, 301호(명일동)	근저당	
변경	1	195	전	3,121	3,121	홍순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2길 50, 옥탑층(성내동)				
당초	2	137-10	전	330	330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변경	2	137-10	전	330	330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서울경기양 돈축산업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 지상권	
								엔에이치저 축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근저당	

지장물(건축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당초	1	137-2	주택	연와조	98.63㎡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변경	1	137-2	주택	연와조	1층 98.63㎡ 2층 98.63㎡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서울경기양돈 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	
					엔에이치저축은 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역삼동, 동훈타워)	근저당		

물 건 (수 목)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당초	137-10	소나무(조형)	H2.2*W2.5*R25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왕벚나무	H8.0*B28	2					
		황매화	H1.2*W0.8	100					
		화살나무	H0.6*W0.3	60					
		화살나무	H2.0*W1.5	1					
		사철나무	H1.5*W0.5	60					
		주목(둥근형)	H0.3*W0.3	65					
		주목(둥근형)	H0.5*W0.5	27					
		주목(둥근형)	H0.6*W0.6	2					
		주목(둥근형)	H1.0*W1.0	5					
		측백나무	H1.2*W0.3	31					
		측백나무	H1.5*W0.4	37					
		측백나무	H2.0*W0.6	22					
		측백나무	H2.5*W0.8	1					
변경	137-10	소나무(조형)	H2.2*W2.5*R25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왕벚나무	H8.0*B28	2					
		황매화	H1.2*W0.8	100					
		화살나무	H0.6*W0.3	60					
		화살나무	H2.0*W1.5	1					
		사철나무	H1.5*W0.5	60					
		주목(둥근형)	H0.3*W0.3	65					
		주목(둥근형)	H0.5*W0.5	27					
		주목(둥근형)	H0.6*W0.6	2					
		주목(둥근형)	H1.0*W1.0	5					
		측백나무	H1.2*W0.3	31					
		측백나무	H1.5*W0.4	37					
		측백나무	H2.0*W0.6	22					
		측백나무	H2.5*W0.8	1					

구 공 고

◆ 노원구공고 제2016-6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2호(2002.05.10)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5-88호(2015.0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7호(2015.03.12)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18호(2015.06.18)로 실시계획변경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333호(2016.04.07.)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40호(2016.05.04.)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최종)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4번지, 산1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 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4번지, 산15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 보상 등

다. 사업규모 : 15,634㎡(당초 17,627㎡)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02-2116-396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최초사업인가일 : 2015.3.12.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기 정										변 경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용 상황	면적 (㎡)	지적 (㎡)	지목	소재지	이용 상황	면적 (㎡)	지적 (㎡)	지목	소재지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17,627					15,634						17,627									
상계동 산152-4	임	16,718 (3/15)	16,718 (3/15)	임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터레빌6단지)	임	1,993 (3/15)	1,993	임	상계동 산152-4	임	1,993 (3/15)	1,993	임	상계동 산152-4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외		
			16,718 (1/10)	임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93 (1/10)				임	1,993 (1/10)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외		
			16,718 (1/10)	임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93 (1/10)				임	1,993 (1/10)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외		
			16,718 (1/5)	임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93 (1/5)				임	1,993 (1/5)				이지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외		
			16,718 (4/20)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93 (4/20)				임	1,993 (4/20)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제외		
			16,718 (1/10)	임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1,993 (1/10)				임	1,993 (1/10)				최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치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제외		
			16,718 (1/10)	임	최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1,993 (1/10)				임	1,993 (1/10)				최영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제외		
										임	상계동 산152-4	대	132 (3/15)	132	임		이순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터레빌6단지)			추가		
												대	132 (1/10)	132			이영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대	132 (1/10)	132			이인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용 상황	지적 (㎡)	면적 (㎡)	성 명	주 소	이해 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저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추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 605동 1004호 (신봉동, 신봉마을동부센트레빌(6단지))			추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406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2동 603호(대저동, 개포1차우성아파트)			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 110, 7동 805호(개포동, 경남아파트)			추가
상계동 산151	임	909	909	임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물진조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기정					변경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 이용현황)	구조 및 구역	수량	소유자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 이용현황)	구조 및 구역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상계동 산152-4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50㎡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상계동 산152-4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50㎡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132㎡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132㎡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28㎡	미상			건물 (주거용)	벽돌, 시멘트	28㎡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추가
	장독대		13개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장독대	콘크리트	6개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추가
	수목	평나무	3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수목	평나무	3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개암나무	3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개암나무	3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매화나무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매화나무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벚나무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벚나무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단풍나무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단풍나무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잣나무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잣나무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미스김라일락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미스김라일락	2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철쭉	6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철쭉	6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옥매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옥매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결함매화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결함매화	1주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심야보일러		1대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추가
							에어컨		1대	이희남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59(상계동)	추가

기 정					변 정				
소재지	물건의 종류(실제 이용현황)	구조 및 구역	수량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비고	
상계동 산151	묘지		1구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이혁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7동 6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추가	

◆ 동작구공고 제2016-7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7-1호(2007.1.4)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13호(2016.2.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노량진동 315-7~상도동 362-36)”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5-7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12m, 연장 282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6. 2. 11 ~ 2016. 8. 31

○ 변 경 : 2016. 2. 11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사. 열람기간 : 2016.8.18 ~ 2016.8.31(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820-9903)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빌딩 10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m²)

연 번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도동 363-253	대지	8	8	이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63-18			
2	노량진동 314-43	도로	411	411	동작구	-			
3	노량진동 302-427	대지	32	32	동작구	-			
4	상도동 363-295	잡종 지	164	151	국 (기획재정부)	-			
5	노량진동 314-88	도로	393	393	동작구	-			
6	노량진동 315-142	도로	257	235.4	동작구	-			
7	노량진동 산30-75	임야	614	614	동작구	-			
8	노량진동 302-426	대지	23	23	동작구	-			
9	상도동 363-254	대지	28	28	동작구	-			
10	노량진동 314-94	대지	3	3	서울특별시	-			
11	노량진동 315-135	도로	1,443	1,297	동작구	-			
12	상도동 363-59	도로	17	17	국 (기획재정부)	-			
13	노량진동 314-121	도로	3	3	동작구	-			
14	노량진동 314-118	도로	6	6	동작구	-			
15	노량진동 314-98	대지	71	71	서울특별시	-			
16	노량진동 314-97	대지	131	131	서울특별시	-			
계	16필지		3,604	3,423.4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코스타 수상레저	강남구 압구정동 380-2	반포대교 ~한남대교 상류300m	동력선 2척(23㎡) -모터보트 2척	수상레저사업	2016.8.10. ~ 2016.12.15	2016. 8.1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9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49-12번지 등 12필지
 - 면 적 : <당초> 영구 9,678㎡, 일시 2,246㎡
 <변경> 영구 9,688㎡, 일시 2,24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점재교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점재교(B=18.24m,L=235m) -접속교 -보도육교 -(임시)가설교량(B=8m,L=87m)	-점재교(B=18.24m,L=235m) -접속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2대 신설 -(임시)가설교량(B=8m,L=87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영구(2008.08.25.~2015.12.31.)
 <변경>영구(2008.08.25.~2016.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9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작구청장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82-1번지 등 5필지
 - 면적 : 5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대방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조압수조, 배수관로 신설
 - 내역 :
 - 토출관로(D=1,650mm, 1,100mm) L=35.5m
 - 토출관거(D=1,500mm 3열) L=87m
 - 조압수조(10m×6.5m×9.5m) L=37m
 - 날개벽 1개소
5. 점용기간 : 2016.08.08.~2021.08.07.(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98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80-12번지
 - 면적 :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컨테이너 설치
 - 내역 : 컨테이너(2.4×5.7×2.7m) 1ea, 콘크리트 기초(3m×6m×0.3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08.12.~2021.08.11.(2016.08.12.~2016.09.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